

2015년도의 주목할 만한 IP 판례 – 저작권 부문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상표,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에서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그 판례들이 갖는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특허, 상표 분야 판례에 뒤이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작권 분야의 주목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 종전의 판례

종래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또는 전송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한편 종래 대법원은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제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거나(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도1335 판결),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범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은 있으나(대법원 2006.04.28. 선고 2003도80 판결), 인터넷 링크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다룬 경우는 없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대법원 형사 판결입니다.

2. 미리듣기/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1) 관련 규정과 종전의 판례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권격권에 속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동일성유지권은 약간의 변경만 있어도 일응 침해 성립이 가능한 문언상 요건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와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한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한 종전 판례로는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곡의 일부를 절단하여 전송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곡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 변환, 저장한 후 구매자에게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대상판결 중 2011다101158 사건의 원심은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현방식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2012다109798 사건의 원심은 ‘이는 서비스의 성격상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제공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그 이용자가 이를 마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할 염려가 없고,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악보 전체를 제공하게 되므로 악보 미리보기 서비스는 악보 제공서비스의 사전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2) 대상판결의 요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

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시사점

대사판결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인정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하는 법리를 실시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저작권법의 기본이 되는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은 우리나라의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를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베른협약 Article 6bis, “the right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said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honor or reputation”),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기만 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성립하는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자칫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사판결은 저작물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물의 동일성에 일부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부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를 국제규범 및 저작인격권 보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의 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와 구별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1) 관련 규정과 종전의 판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위 규정 중 (나)항(이른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은 2003년, (가)항(이른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은 2011년 각 개정 저작권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위 각 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나 그 상호 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실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음악◆작권협회에서 음악◆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이하 ‘보호조치’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乙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여 위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乙 등은 저작권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한 사례.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및 나.목의 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구별 기준을 명확히 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상판결은 저작권이 이른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는 전제에서 일정한 인증수단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복제권, 배포권 등’과 ‘공연권’의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 후,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그 사정을 모르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1) 종전의 판례

종래 대법원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판결 등).

다만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 논리적인 인식작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기능적 저작물과 구분되고, 시각작용과 함께 별도의 지각(知覺)작용을 요구하는 어문저작물과도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음악저작물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음의 배열 가능성은 이론상으로 무한대이나 그 중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경우는 한정되고 나아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경우는 더욱 한정되며,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가창곡의 경우 더욱 제한된다. 한편 각 곡을 대비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실시하였던 것이 있을 뿐(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실시하였던 대법원 판례는 없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위 어문저작물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채용하여 이를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실시한 대법원 판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대중음악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창작성을 쉽게 부정하는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5.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저작권법 제99조)의 해석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1) 관련 규정과 종전의 논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99조 이하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이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으며, 특히 저작물의 ‘영상화’란 개념에 음악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영화의 상영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시 이루어진 음악저작물의 사용허락은 복제권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지, 영화관들이 이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사용허락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음악이 삽입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도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삽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위 판결을 통해 영상저작물 제작자가 당초 음악저작권자측으로부터 영상물 제작에 관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위 규정에 따라 공개상영에 대한 허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화관들이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영화의 상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에 걸친 상세한 논의를 통해 저작권법 제99조의 취지와 적용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영상저작물의 유통 촉진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이념 및 위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궁극적인 목적과 입법취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을 통해 영화제작 실무에 맞는 보다 유연한 음악저작물의 사용 환경이 조성되어 영상저작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41	E-Mail. bklim@shinkim.com
●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5	E-Mail. shim@shinkim.com
● 류정선 변호사	TEL. 02 316 1732	E-Mail. jsryu@shinkim.com
● 박성현 변호사	TEL. 02 316 1772	E-Mail. shypark@shinkim.com